

구미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5.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정이유

- 가. 구미시의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시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지원근거 마련
- 나. 지역 문화유산의 계승·발전과 시민의 문화유산 보존 활동을 장려하여 이를 적극 육성·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문화유산 및 활용에 관한 용어 정의(안 제2조)
- 나.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에 관한 사업 및 활동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의 지출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안 제5조)

3.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문화기본법」 제9조 1호, 동법 제13조 1항
「지방재정법」 제17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합 의 : 규제개혁T/F팀, 청렴정책팀과 합의
- 라. 기 타 : 해당없음

구미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 문화유산을 보존 및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문화유산의 계승·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유산”이란 「문화재보호법」 또는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국가 또는 경상북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과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인 문화자산으로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경관적 가치가 크다고 여겨지는 유형·무형의 유산 및 민속자료 등을 말한다.
2. “활용”이란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온 유형·무형의 문화유산이 지닌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나 기능 또는 능력을 살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책과 장려)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문화유산의 계승·발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보존·활용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유산 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유산 보존활동, 활용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문화유산의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보존·관리를 위한 활동
2. 문화유산을 활용한 교육, 공연, 체험프로그램
3. 전통예절, 의례, 민속행사 등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계승 활동
4. 문화유산의 발굴·조사, 사료의 수집·보존·발간, 역사인물 연구 등 학술연구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문화기본법」

제9조 (문화 진흥을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

제13조 (문화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과 실·과		문화예술담당관실
입 안 자	과 장	김 구 연
	담 당	강 황 진
	담 당 자	최 진 구 (480-6624)